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2023회계연도 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2023학년도 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2024년 0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4년 4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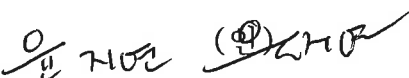
학교법인 창성학원

감사 : 

감사 :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 창성학원 관리과장

성명 : 

학교법인창성학원 감사지적(권고) 사항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해당없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창성학원 이사장 임정섭

